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】

의안 번호	681
----------	-----

2022. 3. 22.
자치행정위원회

1. 제안경과

본 조례안은 2022년 3월 10일 김진희 의원 등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안건으로 3월 11일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 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를 도모하는 등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함 (안 제1조 및 제2조)
- 시장의 책무와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함 (안 제3조 및 제4조)
- 행복마을관리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6조)
 - 10명 이내 지킴이와 사무원을 둠(평일 08시 ~ 24시까지 운영)
- 행복마을관리소의 기능과 구성원의 임무 규정 (안 제7조 및 제8조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- 본 조례안은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 등으로부터 취약계층의 보호와 주민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설치한 행복

마을관리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서, 주요 내용은 안 제3조에는 시민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복마을관리소의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 안 제6조에는 행복마을관리소의 구성원과 근무 시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, 안 제7조와 제8조에는 기능과 행복마을지킴이 및 행복마을사무원의 임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, 안 제11조에는 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음.

조례의 체계와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, 행안부 주관 혁신 사례 사업으로 선정된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사업은 도비(50%) 보조 사업으로 2022년 1월 기준 31개 시·군에 95개소가 운영 중이며, 우리 시에는 진건읍, 진접읍, 조안면에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고, 안전순찰 및 지역환경 개선과 생활불편 해소, 지역 특화사업 분야로 활동 실적을 관리하고 있음.

본 조례의 제정으로 현재 설치 운영되고 있는 행복마을관리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, 주민 이용 만족도가 높은 만큼 원도심 등 주거 취약지역에 대한 추가 확대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생략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부.